

## 통영리스타트플랫폼 관리 및 운영 조례

[시행 2023.10.06]  
(일부개정) 2023.10.06 조례 제1820호

관리책임부서명 : 도시재생과  
관리책임전화번호 : 055-650-5810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통영리스타트플랫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“통영리스타트플랫폼”이란 통영 봉평지구 폐조선소 재생사업 추진에 따라 시민들의 취·창업 및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.

**제3조(위치)** 통영리스타트플랫폼은 통영시 도남로 195 일원에 둔다.

**제4조(업무)** 통영리스타트플랫폼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통영리스타트플랫폼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
2. 취·창업관련 교육 운영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
3. 통영리스타트플랫폼 시설 및 수입금 관리
4. 통영리스타트플랫폼에 관한 간행물 발간, 홍보 등에 관한 사항
5.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사업 추진
6. 그 밖에 통영리스타트플랫폼 운영 등에 필요하다고 통영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인정하는 사항

**제5조(개관 및 휴관)** ① 통영리스타트플랫폼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.

1. 1월 1일, 설날·추석 연휴
  2.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공휴일의 다음날. 다만, 제1호의 공휴일의 다음 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3. 그 밖에 시장이 시설의 점검 및 보수 등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
-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할 경우 그 내용을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알려야 한다.

**제6조(사용신청)** ① 통영리스타트플랫폼의 시설 및 설비(이하 “시설등”이라 한다)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 5일 전까지,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개시 2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시설등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.

**제7조(사용의 제한 등)**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등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1.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등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
2.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3. 시설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
4. 특정제품의 선전, 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
5.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
6.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등의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

**제8조(사용시간 및 사용료)** ① 시설등의 사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하되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.

② 시설등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.

**제9조(사용료의 감면)**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.

## 1. 전액 면제

가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전시·공연·행사·교육

나. 「통영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2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자

## 2. 100분의 50 감액

가. 통영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행사

나.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로서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다.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사용료를 감액할 수 있는 전시·공연·행사·교육

**제10조(사용료의 반환)**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.

## 1. 전액 반환

가.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등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

나. 통영리스타트플랫폼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등의 사용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

다.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

2. 일부 반환: 사용자가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사용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

**제11조(사용자의 설비)**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비용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.

**제12조(위탁운영)** 시장은 통영리스타트플랫폼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·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·단체, 통영시에서 설립한 출자·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(조례 제1820호, 2023. 10. 6.)**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층별 기본시설 및 부대설비(제6조 관련)

1. 층별 기본시설

구분	시 설 내 용	면 적	비 고
1층	아트홀, 갤러리, 창업점포(판매점 등)	점포 각40.64m <sup>2</sup>	
2층	창업공작소(휴게음식점, 다중이용시설 등)	88m <sup>2</sup>	
3층	교육시설 : 세미나실 1~5호 / 미디어실 · 세미나실 1호, 2호 : 각 40명 · 세미나실 3호 : 100명 · 세미나실 4호 : 30명 · 세미나실 5호 : 16명 · 미디어실 : 20명	91m <sup>2</sup> 187m <sup>2</sup> 67m <sup>2</sup> 50m <sup>2</sup> 65m <sup>2</sup>	
4층	창업LAB실(23개실)	13m <sup>2</sup> 8실 18m <sup>2</sup> 6실 23m <sup>2</sup> 9실	
5층	공유오피스	187m <sup>2</sup>	
※ 창업공간(1층, 2층, 4층)은 별도의 모집 및 선정 절차를 통해 사용할 수 있다.			

2. 부대설비 : 아트홀 무대·조명·영상·음향시설, 대기실, 피아노, 키보드 및 그 밖에 행사·교육 등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설비와 냉·난방시설

[별표 2]

시설 사용료(제8조 관련)

시설명		사용기준		사용료(원)	비고
아트홀(1층)		기본대관 (9:00~21:00)		30,000	※ 기본대관은 하우스 조명 및 기타 사용료 가 발생하지 않는 부 대시설만 포함
		기본 대 관	음향시설 포함	40,000	
			조명시설 포함	50,000	
갤러리(1층)		기본대관 (9:00~21:00)		20,000	
교육 공간	세미나실 1호, 2호, 4호, 5호	1시간		5,000	
	세미나실 3호, 미디어실	1시간		8,000	
창업 공간	창업점포 (1층 2실)	1개월 1개소당		70,000	총 2개소
	창업공작소 (2층)	1개월		250,000	1개소
	창업LAB (4층 23실)	1개월	13㎡	20,000	8실
			18㎡	30,000	6실
			23㎡	40,000	9실
공유 오피스	구분	1일	1주일	1개월	책상, 의자, 랜선(wifi), 서랍장, 책꽂이, 개인사물함 등
	독립석	8,000원	40,000원	120,000원	
	일반석	5,000원	25,000원	75,000원	
	오픈석	3,000원	15,000원	45,000원	책상, 의자, 랜선(wifi)
<p>1. 시설의 부대장비 및 냉·난방기 사용료는 별도로 적용할 수 있다.</p> <p>2. 창업공간의 전기·수도료, 청소용역비 등 공과금은 별도로 적용한다.</p>					